

하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제출연월일 : 2026. 7.

제 출 자 : 하남시장(식품
위생농업과)

1. 제안이유

- 현행 조례는 당연직 위원인 담당업무 국장의 명칭을 조직개편 시마다 개정하고 있음. 이에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, 조례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‘식품진흥기금 업무 담당 국장’으로 개정하고자 함
- 조문상 용어·표기 오류를 정비하여 시민에게 보다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제공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부위원장 직책 명칭 변경(안 제7조제3항)
- 나. 용어·표기 오류 정비(안 제1조 등 총 17개 조문)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직위 명칭 변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, 조문상의 용어 및 표기 오류를 법제처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,

-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되는 것으로
사료됨.